

[별지 제23호서식]

기 관 명

호 발 제 호 19 . . .

수 신 (신고 (신청)의무자)

본 적

주 소

제 목 최 고

1.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○○ 신고(신청)를 해태하고 있사오니  
19 . . . 까지 신고(신청)하시기를 최고합니다.
2. 위 기한내에 신고(신청)하지 아니한 때에는 (호적법에 의하여) 과태료의 처분을  
받을 수 있습니다.

시·읍·면장 ○○○

직인

4101-1-15A  
1970.1.14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 50g/m<sup>2</sup>)